



2019
장애인일자리사업 안내



2019
장애인일자리사업 안내



2019
장애인일자리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2019 장애인일자리사업 안내 목차

장애인일자리사업	4
공통사항	6
기타 안내사항	9
일반형 일자리	10
복지일자리	12
특화형 일자리	14

장애인일자리사업

1. 사업 목적

-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
- 장애 유형별 맞춤형 신규 일자리 발굴 및 보급을 통한 장애인일자리 확대
- 근로연계를 통한 장애인복지 실현 및 자립생활 활성화

2. 사업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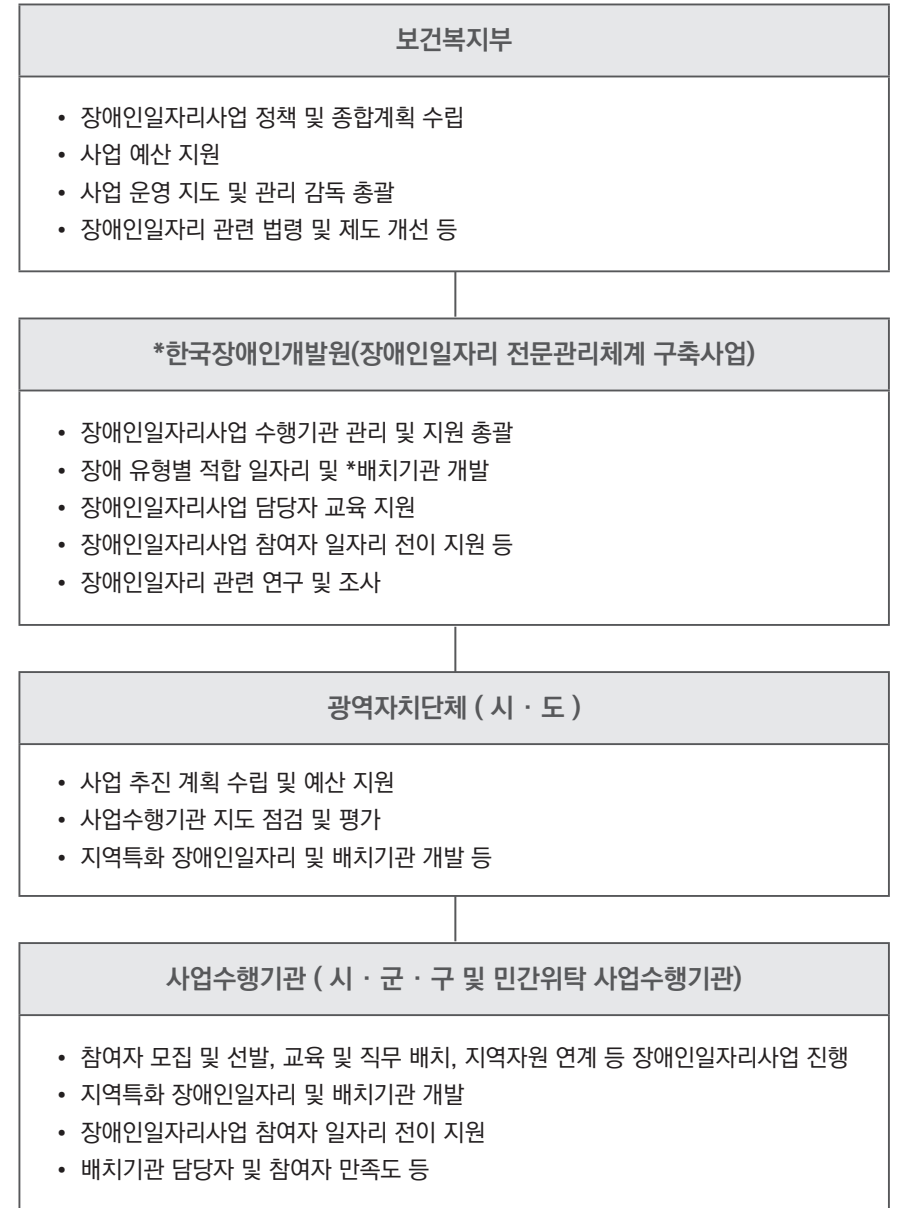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 특화형일자리로 구분

일반형일자리	· 행정도우미 · 전담지원 행정도우미 · 복지서비스지원요원	미취업장애인의 일반노동시장으로 전이를 위한 실무능력 습득을 지원하고, 일정기간 소득을 보장하는 일자리
복지일자리	· 참여형 ·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여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직업경험을 지원하는 일자리
특화형일자리	·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미취업 장애인에게 특화된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소득을 보장하는 일자리

- 사업기간: 12개월(1월~12월)

구분		근로시간		급여(월)	지원인원
일반형 일자리	전일제(주 5일)	1~11월	주 5일(40시간)	1,745,150원	5,446명
		12월	주 37.5시간	1,636,600원	
	시간제	1~11월	주 20시간	872,580원	1,825명
		12월	주 19시간	826,650원	
복지 일자리	참여형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주 14시간 이내 (월 56시간)		467,600원	11,244명
특화형 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주5일)	1~11월	주 5일(25시간)	1,113,740원	760명
		12월	주 5일(23.5시간)	1,045,500원	
	발달장애인 요양 보호사 보조일자리(주5일)	1~11월	주 5일(25시간)	1,093,850원	577명
		12월	주 5일(23.5시간)	1,027,050원	

3. 사업 추진체계 및 역할





1. 장애인일자리 참여 신청 제외 대상

-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단, 연소득이 5,611,200원 이하인 사업자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단, 일반형일자리(시간제), 복지일자리, 특화형일자리는 아래의 경우 신청가능
-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 임직원
※ 수행기관 및 배치기관에 법인 또는 기관단체 대표, 임직원
- ⑧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만 해당)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단,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의제 01254-15864호(1987.6.26.)]

2. 반복참여 제한

- 반복참여는 최대 연속하여 2년까지만 허용, 2년 초과 시 1년간 참여 제한
(당해연도 참여일수가 총 180일이 초과하는 경우는 1년 참여자로 간주)

2년을 초과하여 참여 가능한 경우

- 중증장애인(장애등급1~3급)
- 만 65세 이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3. 일자리 전이 지원

- 참여자가 직업상담,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을 실시한 후 관련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일정 범위에서 시간 근로시간으로 인정
- 인정교육과정
Q-Net(<http://www.q-net.or.kr>) 자격정보에서 확인 가능한 국가자격증 과정 및 국가공인민간자격증 과정
- 확인방법
직업재활서비스(직업훈련) 확인서를 서비스 제공자에게 확인 받은 후 담당자에게 제출
- 인정범위

사업 유형	근로시간으로 인정 시간
일반형 일자리(전일제/시간제)	전일제 : 연 60시간 이내(월 최대 20시간 이내) 시간제 : 연 30시간 이내(월 최대 10시간 이내)
복지일자리(참여형/연계형)	연 21시간 이내(월 최대 10시간 이내)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연 38시간 이내(월 최대 12시간 이내)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4. 참여 중단 조치

1) 즉시 참여 중단

참여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를 초래하였을 경우 즉시 참여 중단 조치 가능

- 장애등급 재판정 심사결과 등급 외 판정을 받고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경우
-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경우
※ 일반형일자리(전일제)의 경우이며, 그 외 사업유형은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로 근무 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 참여 가능
- 부정수급 발생 시
(예 : 타인이 근무한 경우, 실제 출근하지 않았는데 출근으로 처리한 경우 등)

2) 징계위원회를 통한 참여 중단

참여자 아래와 같은 사유를 초래하였을 경우 징계위원회를 통해 참여 중단 조치 가능

- 연속 5일 이상 또는 월간 10일 이상 무단결근을 한 경우
- 참여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근무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를 초래하여 참여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 참여자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3) 절차를 통한 참여 중단

참여자 아래와 같은 사유를 초래하였을 경우 참여중단 절차에 따라 참여 중단 조치 가능

- 업무지시 불이행, 민원야기, 근무지 이탈, 음주행위, 업무 태만 등 기타의 사유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참여 중단 절차]

절차	내용	비고
시정조치	사업수행기관 담당자는 참여자와 면담	면담 후 상담일지를 작성하여 보관
경고조치	시정조치 후에도 반복될 경우 업무경고장을 통한 경고 조치	업무경고장은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참여자에게 주고 1부는 기관 보관
징계위원회	경고조치가 2회 이상 반복된 경우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 실시	해당 시·군·구, 사업수행기관, 배치기관 담당자 참석 ※ 참여자에게는 소명의 기회를 줘야함
참여중단 조치	징계위원회 결과 참여 중단 결정된 경우, 참여중단예고통지서를 통한 참여 중단 조치	참여중단예고통지서는 참여 중단일 30일 전에 참여자에게 전달해야함

※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을 통해 참여가 중단된 경우, 중단시점으로부터 이후 1년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를 제한함.

1. 자격증 취득 동영상 강좌 제공

- 참여자의 직업역량 강화를 위해 ITQ 자격증 취득을 위한 동영상 강좌를 제공합니다. 아래와 같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방법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 (www.koddi.or.kr)에 접속합니다.
「자료실」 ⇨ 「교육」 ⇨ 「온라인교육」

2. 여성 참여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 임신하여 출산을 앞 둔 여성 참여자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신부의 보호).
- 임신 중의 여성 참여자는 출산 전과 후 90일의 휴가가 주어집니다. 단, 12월 31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출산휴가 또한 종료됩니다.

일반형 일자리

1. 유형별 근무 내용 및 근무 장소

직무명	직무내용	주요 배치기관
행정도우미	공공 및 복지행정 업무지원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공공기관 등
전담지원 행정도우미	장애인일자리사업 업무 전담지원	시·군·구청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사회(장애인)복지 전반의 행정전담 지원 및 직접서비스(프로그램) 지원	민간 위탁 수행기관,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보조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비영리 복지시설(기관) 등

2. 교육

※ 교육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

구분	기본교육(필수)
시행 주체	시·군·구청 또는 민간위탁 사업수행기관
교육 방법	기관별 집합교육 또는 배치기관별 집합교육
교육 시간	4시간 이내
교육 시기	사업 개시 후 1개월 이내
교육 내용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침, 안전보건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직무 및 직업 소양교육 등

3. 근무형태 및 복무규정

- 근무시간: 전일제 일자리 1월~11월 주 40시간 / 12월 주 37.5시간
시간제 일자리 1월~11월 주 20시간 / 12월 주 19시간

◆ 휴가, 병가 등을 사용할 경우
담당자에게 반드시 사전에 근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휴가: 1월 1일~ 12월 31일 참여자 → 연 15일(1년간 출근율 80% 이상일 경우)
중도참여자 → 1개월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
- 병가: 전일제 일자리 연 10일(80시간)
시간제 일자리 연 10일(40시간)
* 중도 참여자도 연간 10일의 병가 발생, 처방전은 당일만 인정
(병가 사용 시 증빙서류 → 의사의 진단서 또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 특별휴가

구분		휴가일수	증명서류
결혼	본인	5일	청첩장
	자녀	1일	
사망	배우자	5일	- 부고장 또는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일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2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일	
입양	본인	20일	입양확인서
출산	배우자 출산	5일	출생증명서

○ 공가

-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되는 경우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는 경우(사전투표는 제외)
-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검진 대상자로 통보 받아 수검을 받을 경우
- 장애인일자리사업 교육, 시상식 등 장애인일자리사업 관련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민간일자리 전이를 위해 취업알선 및 취업전이 교육에 참가하는 경우
- 배치기관의 사유(창립기념일, 개관기념일, 개교기념일)로 휴업을 하는 경우
- 본인의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식에 참여하는 경우
- 국내대회 및 국제대회에 선수로 참가하는 경우
국내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국제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올림픽대회, 스페셜올림픽대회, 농아인올림픽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청소년올림픽대회, 아시아장애청소년경기대회
- ※ 단, 대회추진기관의 공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기 일정이 인정되며 국제대회에 한하여 이동시간을 포함

4. 보수·보험

보수	전일제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	
	1~11월	1,745,150원	1~11월	872,580원
	12월	1,636,600원	12월	826,650원
보험가입	4대보험 가입(국민·건강·고용·산재보험)			

복지 일자리



1. 유형별 근무 내용 및 근무 장소

직무명	직무내용 및 배치기관
사무, 도서관사서, 우편물분류, 환경정리 등 (30개 직무)	직무에 따라 다름

2. 교육

※ 교육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

구분	기본교육(필수)
시행 주체	시·군·구청 또는 민간위탁 사업수행기관
교육 방법	기관별 집합교육 또는 배치기관별 집합교육
교육 시간	4시간 이내
교육 시기	사업 개시 후 1개월 이내
교육 내용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침, 안전보건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직무 및 직업 소양교육 등

3. 근무형태 및 복무규정

○ 근무시간: 월 56시간

○ 공가

-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되는 경우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는 경우(사전투표는 제외)
-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검진 대상자로 통보 받아 수검을 받을 경우
- 장애인일자리사업 교육, 시상식 등 장애인일자리사업 관련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민간일자리 전이를 위해 취업알선 및 취업전이 교육에 참가하는 경우
- 배치기관의 사유(창립기념일, 개관기념일, 개교기념일)로 휴업을 하는 경우
- 본인의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식에 참여하는 경우
- 국내대회 및 국제대회에 선수로 참가하는 경우
국내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국제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올림픽대회, 스페셜올림픽대회, 농아인올림픽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청소년올림픽대회, 아시아장애청소년경기대회

※ 단, 대회추진기관의 공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기 일정이 인정되며 국제대회에 한하여 이동시간을 포함

4. 보수·보험

○ 보 수: 467,600원정(고용보험 본인부담금 공제 후 지급)

○ 보험가입: 고용·산재보험 가입

※ 복지일자리는 주 14시간 미만의 단시간근로자로 연차유급휴가 및 퇴직금이 없음
(근로기준법 제18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근거)

특화형 일자리

1. 유형별 근무 내용 및 근무 장소

사업유형	직무내용	주요 배치기관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	노인복지관, 경로당을 이용하는 고령의 노인들에게 안마서비스 제공	안마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정 시설 여건 등을 갖춘 노인복지관, 노인여가시설(경로당),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장애인복지관 및 종합복지관
발달장애인이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	요양보호사가 배치되어 있는 노인복지법상의 노인복지시설과 의료법상의 노인전문병원 등

2. 교육

※ 교육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

○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

구분	기본교육(필수)
시행주체	민간위탁 사업수행기관
교육 방법	기관별 집합교육 또는 배치기관별 집합교육
교육 시간	4시간 이내
교육 시기	사업 개시 후 1개월 이내
교육 내용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침, 안전보건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직무 및 직업 소양교육 등

○ 발달장애인이양보호사 보조일자리

구분	기본교육(필수)	보수교육(필수)
시행주체	민간위탁 사업수행기관	
교육 방법	수행기관 또는 지역사회 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연계를 통한 개별 및 집합교육	
교육 시간	1~2주 이내(25시간~50시간) *18년 교육 받은 사람은 5~10시간	1~2일 이내(5~10시간)
교육 시기	직무배치 전 2주 이내	직무배치 후 6개월 이내
교육 내용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침, 안전보건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직무 및 직업 소양교육 등	근무하면서 필요한 교육

3. 근무형태 및 복무규정

○ 근무시간: 1일 5시간 / 주 5일(주 25시간)

◆ 휴가, 병가 등을 사용할 경우
담당자에게 반드시 사전에 근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휴가: 1월 1일~ 12월 31일 참여자 → 연 15일(1년간 출근율 80% 이상일 경우)
중도참여자 → 1개월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

○ 병가: 연 10일
(병가 사용 시 증빙서류 → 의사의진단서 또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처방전은 당일만 인정

○ 특별휴가

구 분		휴가일수	증명서류
결혼	본인	5일	청첩장
	자녀	1일	
사 망	배우자	5일	- 부고장 또는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일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2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일	
입 양	본 인	20일	입양확인서
출 산	배우자 출산	5일	출생증명서

○ 공가

-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되는 경우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는 경우(사전투표는 제외)
 -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검진 대상자로 통보 받아 수검을 받을 경우
 - 장애인일자리사업 교육, 시상식 등 장애인일자리사업 관련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민간일자리 전이를 위해 취업알선 및 취업전이 교육에 참가하는 경우
 - 배치기관의 사유(창립기념일, 개관기념일, 개교기념일)로 휴업을 하는 경우
 - 본인의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식에 참여하는 경우
 - 국내대회 및 국제대회에 선수로 참가하는 경우
- 국내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국제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올림픽대회, 스페셜올림픽대회, 농아인올림픽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청소년올림픽대회, 아시아장애청소년경기대회

※ 단, 대회추천기관의 공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기 일정일 인정되며 국제대회에 한하여 이동시간을 포함



4. 보수·보험

구분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		발달장애인이양보호사 보조일자리	
	보수 (4대보험 본인부담금 공제 후 지급)	1~11월	1,113,740원	1~11월
	12월	1,045,500원	12월	1,027,050원
보험가입	4대보험 가입(국민·건강·고용·산재보험) 및 배상책임보험			